

보도자료

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과 장 이형석 (044-205-4140) 사무관 박정일 (044-205-4147)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과 장 이희원 (044-203-5270)

서기관 오재철 (044-203-5271)

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장 홍성준 (044-201-4987) 사무관 김부병 (044-201-4988)

소방청 화재예방과 과 장 이윤근(044-205-7440) 소방령 이인중(044-205-7441)



관계부처 합동

2019년 4월 30일(화) 석간 (4. 30. 11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, 제2의 제천 · 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

-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227개 과제 추진 -

- □ 정부는 제천('17.12.), 밀양 화재('18.1.)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, 국토교통부 (장관 김현미), 소방청(청장 정문호)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대책(안)을 마련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.
 - 이번 대책은 작년 2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TF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으며, 작년 7월부터 시작한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도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다.
 - 한편, **화재안전 특별조사**는 올해 말까지 실시하여 총 55만 4천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, 조사 결과는 데이터 베이스(DB)로 구축하여 공개할 계획이다.

- □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, 예방·대응체계 강화,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,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건축, 전기, 취약시설 등 화재안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.
 - 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,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이 **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***를 **사용할 수 없도록** 한다.
 - * (현행)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사용 금지
 -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마다 화재의 확산을 막는 **방화구획***을 하도록 한다.
 - * (현행) 1층과 2층은 방화구획 의무대상에서 제외
 -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고 화재, 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 정립,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「건축물관리법」을 제정하였다.('19.4.30. 공포)
 - 특히, 기준 강화 이전에 건립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·노유자시설 등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*한다.
 - * 국비 총 95.5억 원 지원 예정('19년 9.6억 반영)
 - 단순히 적합·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**안전등급제** (예: A~E등급)를 도입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.
 - 전기산업 진흥과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「전기안전관리법」*을 제정하여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.
 - * 전기설비 안전등급제,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규정 강화

- 현재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표기 하고 있는데, 화재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.
- 용접 작업 중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,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·용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**화재감시자를** 배치*하여 불티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.
 - * (현행) 연면적 $1만5천m^2$ 이상 건설공사 등 \rightarrow (개선) 가연물 보유 장소로 전면 확대
 - 또한, 현장 책임자에게 작업 전에 승인을 받고 용접 작업을 진행 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.
- 고시원, 의료기관 등 이용자 특성 상 **화재에 취약한 시설**은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.
 -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,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해 올해 추경(안)에 70.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.
 -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남는 병원이 없도록 한다.
 - 화재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**전통시장**에는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고, 사물인터넷(IoT) 기반의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기반을 지속 개선*할 계획이다.
 - * ('19년) 노후 전기설비 교체 90.9억 원, 화재알림시스템 설치 131.7억 원 등
- 고양 저유소('18.10.)나 KT 통신구('18.11.)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 되지 않도록 **기반시설의 화재안전 관리**도 개선한다.

-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는 11년 주기로 실시하는데,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주기를 단축한다.
- 현재 500m 이상의 **통신구**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시설 설치는 모든 통신구에 확대하고, 최근 화재가 빈발한 **에너지저장장치** (ESS)는 설치기준과 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하기로 하였다.

② **화재예방·대응 기능 역량**을 향상시킨다.

- 현재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수용 인원, 건물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예방 기능을 강화한다.
-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 화재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한다.
 - 대형 화재의 경우, 지난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과정에서처럼 화재 초기부터 관할 구분 없이 총력 대응하여 신속히 진압한다.
 - 또한, 화재 현장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「화재 대응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한다.
- '22년까지 2만 명의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재배치 하여 소방대의 활동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,
 - 노후 무전기는 '19년까지 전량 교체하고, 좁은 골목에서도 기동성이 좋은 소형 사다리차도 개발·보급하는 등 소방 장비도 개선한다.

- ③ 국민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.
 -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**'불나면 대피** 먼저!' 교육을 강화하고,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전 예고 없는 **불시** 대**피훈련을 실시**하는 등 훈련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.
 -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,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.
- □ 정부는 이날 보고된 대책이 **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** 확인·점검할 계획이며, 앞으로도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붙임1

국민을 위한 화재안전대책



건축 안전

▶ 가연성 외장재 금지대상 확대

6층 이상 건물









모든층



(피난약자 이용시설, 화재 취약시설) '22년까지



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

기존 건물에 성능보강 비용 지원









☑지하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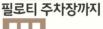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▶ 건축물관리법 제정

화재안전성능의 지속적 유지





전기 안전

▶ 안전점검 개선









안전등급제 도입 등급별 맞춤관리

▶ 전기안전관리법 제정

안전관리 기능 및 책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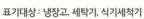




▶ 전기용품 권장사용기간 표기 대상 확대



적합/부적합만 판정





선풍기, 전기밥솥 추가

▶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정기점검 신설





사업장 안전

▶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2인1조 작업 정착



▶ 화기작업은 현장 책임자가 예방조치 사전 확인 후 진행



취약시설 안전

▶ 고시원



스프링클러 미설치 1,826개소



기존 고시원 에 간이스프링클러

설치 비용 지원 ('20년까지 97.4억윈 지윈) ₩





일정 층수·면적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



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에 의무화

화재상황 대응

▶ 대응 방식



현장 인력 장비 단계적 증가



최고 수준으로 우선 대응 후 단계적 완화

▶ 출동시간 단축



시·도별 관할 지역에 따른 출동



현장 도착시간 중심의 출동체계

▶ 현장 소방인력 증윈



▶ 소방인력 교육

.....



이론 · 사례 중심의 강의식 교육



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모의훈련

소방장비

노후된 아날로그 무전기를 신형 디지털 무전기 로

전량 교체(*19년까지 완료)







안전문화 확산

▶ 대피 교육



소화요령 위주의 교육·홍보





대피요령 중심의 '불나면 대피 먼저!' 교육

▶ 체험교육 시설 확충



안전체험관



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

1. 추진 배경

- □ 제천('17.12.), 밀양('18.1.)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지속 ※ 연평균 화재 43,309건, 사상자 2,272명(사망 340, 부상 1,932) 발생(최근 3년)
 - 취약시설 이용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화재 안전기준, 열악한 현장대응 여건 등 **화재예방·대응체계의 문제점 노출**
- □ '화재안전 특별TF'*(단장: 청와대 정책실장)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
 * 기획·총괄, 제도개혁, 대응시스템, 국민참여 등 4개 분과 운영

□ 추진 경과

화재안전TF 구성·운영
BH 및
관계기관
′18.2월~

특별대책추진계획 보고추진방향 및로드맵 수립'18.4.17. 국무회의

화재안전특별조사화재취약시설대상 종합조사'18.7월~'19.12월

분**과별 대책(안)** 검토 분과별 대책 논의 및 방안 마련 '18.4월~'19.3월

Ⅱ. 화재안전 특별조사

□ 조사 개요

-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55만 4천여 개 건축물 대상 종합조사(기존 20여 개 → 물적·인적·환경적 요인 등 270개 항목) 실시
 - * 1단계('18.7~12월): 약 17만 3천 개 / 2단계('19.1~12월): 약 38만 1천 개

□ 1단계 특별조사 결과

- 총 173,296동 중 **양호** 58,792동(33.9%), **불량** 106,180동(61.3%) 판정
- 화재 위험요인 총 508,002건 확인·보완조치 완료(불법 증축 등 중대 위반사항 11,588건 / 유지·관리 불량 등 자진개선사항 496,414건)

Ⅲ. 주요 대책

목표

- 사전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체계 구축 및 국민안전의식 강화
- ■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현장 대응역량 제고

추진 방향 ■소방시설 위주의 단편적 대책이 아닌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, 3대 분야 총 227개 과제 발굴·추진

추진 과제 (227개) ① 화재안전 제도 개선

(총 158개 과제)

- 건축, 전기 등 공통 화재안전대책
- ■취약 및 기반시설 화재안전대책

② 화재 예방·대응 기능 강화

(총 53개 과제)

- ■화재예방 및 상황관리체계 개편
- 현장 인력·장비 역량 강화

③ **안전문화 확산** (총 16개 과제)

- ■교육·훈련 활성화
-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예방활동

① 화재안전 제도 개선

□ 공통 화재안전대책

- (건축)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에 취약한 자재 사용을 제한*하고, 매 충마다 방화문 등을 설치**하도록 하는 등 기준 강화
 - * (현행) 6층 이상 → (개선) 3층 이상 및 피난약자 이용시설 / ** (현행) 1:2층 제외 -> (개선) 모든 층
 - 기준 강화 이전에 건립된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취약시설(의료·노유자 시설 등)에 보강의무 부여 및 비용 지원*(건축물관리법 제정, '19.4.30. 공포)
 - * 전체 보조지원 대상 건축물은 1,431동(추정), '19년 시범사업 실시(72동, 9.6억원)
- (전기)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(적합·부적합→예:5등급제), 노후
 공동주택 세대 내 정기점검 신설 등 안전점검 내실화
 - 전기 안전관리업무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

- (사업장) 용접·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*, 현장 책임자의 화기작업 사전 숭인제 등 화재예방조치 강화
 - * (현행) 연면적 1만5천m² 이상 건설공사 등 → (개선) 가연물 보유 장소로 전면 확대
 - 학교 공사장에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
 - 공장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 경계지구 및 방화지구 지정 활성화

□ 주요 취약시설 화재안전대책

- **(고시원)** 기존 고시원(1,826개소)의 **간이스프링클러 설치** 의무화 및 비용 지원(국비:지방비:자부담=1:1:1, 국비 총 97.4억 원/′19년 추경(안) 70.7억 원 반영)
- (의료기관)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(간이 포함/현행: 일정 층수·면적 이상에 의무 부여)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
- **(전통시장)** 노후 전기설비 개선('19년 90.9억 원), IoT 기반 화재알림 시스템 설치('19년 131.7억 원) 등 **화재안전 인프라 지속 확대**
- (지하상가·역사) 전 지하역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(미설치 역사 총 47개소) 및 지하공간 피난 시나리오 작성·비치 의무화
- (문화·체육시설) 야영용 시설 천막 방염성능 및 이격거리(3m) 기준 신설, 실내체육시설(체육도장 등) 방염소재 매트리스 설치 의무화

□ 기반시설 화재안전대책

- (석유·가스 저장시설)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 도입(기존 11년 주기),
 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 진단주기 차등화(기존 5년 → 1~7년)
- (통신구) 모든 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(현행: 500m 이상)
 하고 안전점검 대상 확대(기존 A~C등급 → D등급까지)
- (에너지저장장치)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의무화 및 소화설비·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

② 화재 예방·대응기능 강화

□ 예방조치 강화 및 상황관리·대응체계 개편

- 기존 대응 중심의 '불끄는 소방'에서 화재예방기능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조직기능 강화 및 화재안전 관리·감독체계 마련 검토
- 전국 단위의 통합대응을 위해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, **관할지역에**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 도착시간 단축
- 초반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'최고수위 우선 상향 및 단계적 완화' 방식과 대형 재난 발생 시 시·도 대응에서 소방청 중심의 총력대응*으로 개편
 - * '19.4월 강원도 산불 시 최고수위(3단계) 발령,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압

□ 소방인력·장비 등 현장 대응역량 개선

- (인력) 현장인력 증원(2만 명, ~'22년)을 통한 소방력 재배치로 화재 대응 취약지역의 출동시간 단축(소방관서별 수요분석 실시)
- (장비) 노후 무전기 전량 교체('19년 완료)로 지휘 및 상황 전파체계 개선, 소형 소방사다리차 개발·보급 등 소방장비 현장 접근성 제고

③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

- □ '불나면 대피 먼저!'* 교육을 활성화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
 - * 주변 사람도 대피하도록 비상벨을 누르거나 큰소리로 알리며 우선 대피 휴 119 신고하기
- □ '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육'* 확대, 다중이용시설 대상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대피훈련 실시 등 화재대응 역량 강화
 - * 교육지원청·소방서가 협업하여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학교 방문교육 실시

Ⅳ. 향후 계획

- □ 소관 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이행(법령 개정 등) 철저(이행상황 지속 점검)
- □ 2단계 특별조사 실시, 결과 분석 및 지속적 관리체계 마련('~20.上)

붙임3 기관별 담당자 현황

내 용	기관 및 부서	담당자(연락처)
건축물 안전대책	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	김부병 사무관 (044-201-4988)
전기 안전대책	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	박성민 사무관 (044-203-5173)
사업장 안전대책	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	조정익 사무관 (044-202-7759)
고시원 안전대책	소방청 화재예방과	윤태균 소방령 (044-205-7451)
의료기관 안전대책	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	노호영 사무관 (044-202-2471)
전통시장 안전대책	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	전진섭 사무관 (042-481-8930)
석유·가스저장시설 안전대책	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	오재철 서기관 (044-203-5271)
통신구 안전대책	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	이주용 사무관 (02-2110-1949)
에너지저장장치 안전대책	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	박해범 사무관 (043-870-5341)
화재상황 대응체계 개선	소방청 화재예방과	이인중 소방령 (044-205-7441)
화재 대피요령 교육	소방청 생활안전과	이상희 소방령 (044-205-7665)
안전문화 확산	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	공병국 서기관 (044-205-4271)